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508
----------	-------

발의연월일 : 2026. 3. 16.

발 의 자 : 박홍배 · 김한규 · 박용갑  
임오경 · 김태선 · 박균택  
이정현 · 이연희 · 김남근  
민병덕 · 김태년 · 박정현  
진성준 · 박 정 · 이정문  
김현정 · 이수진 · 김원이  
전진숙 · 최혁진 의원  
(2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근로시간 단축, 연차휴가의 분할 사용, 육아·돌봄 등으로 하루 4시간만 근무하는 형태가 점차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휴게시간을 반드시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하고 있어 근로자가 4시간 근무 후 바로 퇴근하기를 희망하더라도 휴게시간을 채우기 위해 사업장에 추가로 30분을 더 머물러야 하는 불편이 발생하고 있음.

한편, 시간 단위 연차 사용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장 별 운영 기준이 상이하고, 육아·돌봄·자기계발 등 다양한 생활 수요에 대응하는 데에도 제도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한 때에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휴게시간 선택권을 확대하고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을 높이려는 것임. 또한 연차 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하는 바에 따라 시간 단위 등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청구하는 때에 이를 부여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시간 활용의 유연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2항 및 제60조제5항 신설 등).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항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아니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한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본문 중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으로 한다.

- ⑤ 사용자는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하는 바에 따라 시간단위 등으로 분할하여 줄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할단위 및 일수의 범위 내에서 청구한 때에는 이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10조제1호 중 “제4항 및 제5항”을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4조(휴게) ① (생략)  <u>&lt;신설&gt;</u></p> <p>② (생략)</p> <p>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 ④                      (생략)  <u>&lt;신설&gt;</u></p> <p>⑤ 사용자는 <u>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u>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p>	<p>제54조(휴게) ① (현행과 같음)  <u>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아니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한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u></p> <p>③ (현행 제2항과 같음)</p> <p>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사용자는 <u>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하는 바에 따라 시간단위 등으로 분할하여 줄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할단위 및 일수의 범위 내에서 청구한 때에는 이를 부여하여야 한다.</u></p> <p>⑥ -----<u>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u>-----                      -----                      -----                      -----                      -----</p>

